

# -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-

## 청사 관리 · 운영 협약서

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-25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를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(이하 ‘재단’이라 한다)과 구로구시설관리공단(이하 ‘공단’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생활체육 진흥 및 50플러스 남부캠퍼스의 인생이모작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로구 오류로 36-25에 설치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(이하 ‘캠퍼스’라 한다)의 원활한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관리·운영 시설의 범위)**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관리·운영하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시설의 범위는 공유시설(붙임1)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- ‘재단’이 관리·운영해야 할 시설 :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시설 중 지하1층~지상4층 부분( $3,374.29m^2$ )
- ‘공단’이 관리·운영해야 할 시설 :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시설 중 지하3층~지하2층 부분( $1,574.48m^2$ )

**제3조(시설유지·보수 책임 등)** ① 각 기관은 상호 청사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제2조 1호, 2호에서 정한 시설의 범위에 대한 관리·운영을 관장하고, 전체 시설의 유지·보수에 대한 총괄관리 및 다음 각 호는 ‘공단’이 맡는다.

- 건축·기계, 전기·냉난방, 소방·공조, 통신(MDF실)·중앙방송시설, 승강기, 보안 등 건축물 전체 설비에 대한 운영·관리 및 주차장, 조경 등 건물외곽 관리
- 중앙감시실 운영(24시간 건물 상주), 승강기·전기 등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
- 상반기, 하반기 년 2회 하자 검사 실시(분야별 하자보증 기간 내) 및 보수요청
- 캠퍼스 전체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

- ③ 제2항의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은 관리·운영의 책임자가 부담한다.
- ④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제3항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- ⑤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시설물의 공사, 수선, 구조변경 등을 하는 경우 상호간 사전 협의 후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협약기간)** ① 관리·운영 협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, 3년 단위로 재(연장)협약 할 수 있다. 다만, ‘재단’의 서울특별시장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.

② 협약기간 만료 시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협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러한 통지 없이 협약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3년간 재연장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청사관리 비용의 부담 등)** ①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의 청사관리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
- 
1. 전기사용료의 부담
  2. 관리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(유지보수, 소모품 구입 등)의 부담
  3. 시설물의 화재 보험료 등 부담
  4. 기타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및 그 비용의 부담
- ② 제1항의 청사관리 비용 중 ‘재단’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전기사용료, 화재보험료, 관리비용 중 제2조에서 정한 재단 시설 비율
  2. 관리인력 인건비 중 시설 2명, 청소 2명, 주차(경비)관리 1명
    - 관리인력 인건비 및 운영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  3.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공유부분에서 발생되는 건축, 전기, 기계 등 시설물의 법정검사, 제세 및 협회비, 승강기의 비용의 부담을 하며, 비용의 부담비율은 ‘불임 2’로 한다.
    - ‘불임 2’에 없는 사항은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.

- ③ 제2항 청사관리 비용은 ‘공단’이 전액 납부 또는 지급하고, 월단위로 정산하여 당월분을 익월 ‘재단’에 부과한다. 납부기간은 발생월의 익월말까지 납부한다.
- ④ 제2항 이외의 발생하는 공용부분의 수선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수선유지비용은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상호협의를 통하여 건별 비율을 적용하여 분담한다.
- ⑤ 기타 관리비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**제6조(사업의 협조)** ①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상호간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상호간의 사업을 존중하여야 하며, ‘재단’ 또는 ‘공단’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계약의 해지 등)** ①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
  2. 관계 법령의 개정, 폐지로 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
  3.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지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한다.

**제8조(협약의 효력 등)**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 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유지된다.

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서명 날인 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.

**제9조(협약의 해석)**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10조(관할법원)**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이행 하여야 하며,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‘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’ 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.

< 부 칙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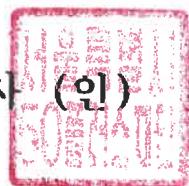
**제1조(협약의 효력발생)** 이 협약은 ‘재단’과 ‘공단’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서 효력을 발생하며, 기 납부한 청사관리 비용의 부담은 본 협약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**제2조(청사관리 분담비율의 조정)** 시설규모의 변동(축소, 확대)시 제6조 2항의 청사관리 분담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.

2017 . . .

(재단)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

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(인)



(공단)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

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(인)



붙임 1)

## 서울특별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공유부분

구 분	주 요 시 설	규 모	비 고
4층	1번계단실, 2번계단실, 엘리베이터	57.07m <sup>2</sup>	
3층	1번계단실, 2번계단실, 엘리베이터	57.07m <sup>2</sup>	
2층	1번계단실, 2번계단실, 엘리베이터	57.07m <sup>2</sup>	
1층	1번계단실, 2번계단실, 엘리베이터	57.07m <sup>2</sup>	766.03m <sup>2</sup>
지하1층	1번계단실, 2번계단실, 엘리베이터, 공조실, 중앙감시실 <small>(화장실, 환기실)</small>	59.29m <sup>2</sup>	
지하2층	1번계단실, 2번계단실, 기계실, 발전기실, 전기실 <small>(화장실, 환기실)</small>	354.62m <sup>2</sup>	
지하3층	2번계단실, 장비반입구	30.42m <sup>2</sup>	

불임 2)

## 법정검사비 분담률

구 분	법 규	주 기	재 단	공 단	비고
전기설비 안전검사	전기사업법	2년 1회	50%	50%	
전기설비 안전진단	전기사업법	매년 1회	50%	50%	
승강기 안전검사	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	매년 1회	50%	50%	
소방종합정밀 점검	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	매년 1회	50%	50%	
소방작동기능점검	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	매년 1회	50%	50%	
건축물안전점검	시특법	매년 2회	50%	50%	

## 협회비 분담률

구 分	관련근거	주기	재 단	공 단	비고
협회비 (소방안전협회)	소방기본법	1년	50%	50%	
협회비 (한국전기기술인)	전기사업법	1년	50%	50%	

※ 상기된 법정검사비 및 협회비 외 사항의 분담률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